

감정평가서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권익환
건명	신한규 소유물건(2024타경1411)
감정서번호	GYA202405-3-07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야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및건물)감정평가표

페이지: 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이호형

감정평가액	육억칠천이백사십사만육천육백육십원정(₩672,446,66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권익환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매5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신한규 (2024타경141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08.16	2024.08.14 ~ 2024.08.16	2024. 08. 19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804	토지	1,804	--	452,532,000
	건물	454.96	건물	454.96	--	217,823,660
	(제시외 건물)	(48.9)	(제시외 건물)	(48.9)	--	1,671,000
	(제시외 수목)	(약6주)	(제시외 수목)	(약6주)	--	420,000
합계					₩672,446,66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건물)으로서, 경매목적의 평가건임.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

(1) 대상물건의 개요

구분	기호	소재지 (함안군)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 상황	형상 지세	비고
토지	1	군북면 소포리 1143	128	답	계획관리	전	부정형 평지	
	2	군북면 소포리 1144	1,396	대	계획관리	상업용	부정형 평지	
	3	군북면 소포리 1145-3	280	답	계획관리	전	부정형 평지	
구분	기호	소재지 (함안군)	구조 및 층수		공부면적	공부상 용도	사용승인일자	
건물	4	군북면 소포리 1145-2, 1144	에이, 비동호 조적조슬래브지붕 단층		186.78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97.01.15	
	4-1	군북면 소포리 1145-2, 1144	부속건물 조적조슬래브지붕단층		14.31	화장실	1999.09.21	
	5	군북면 소포리 1145-2, 1144	시동호 토담조 황토흙위싱글지붕 단층		99.11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99.09.21	
	6	군북면 소포리 1145-2, 1144	디동호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154.76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01.11.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공법상 제한사항(토지이용계획사항) 및 주위환경
별첨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3. 기준시점의 결정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4. 08. 16일을 기준시점으로 함.

4. 실지조사를 실시한 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4.08.14 ~ 2024.08.16일의 기간 동안 대상 현장확인하여 실지조사를 하였음.

5.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6.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1) 본건 지상에 별첨 ‘사진 및 지적및건물개황도’ 에 개략적으로 도시한바와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바 개략적인 실측면적에 의거 평가하였음.

(2) 본건 토지는 평가목적, 제시외건물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시외건물에 구매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3) 본건 지상의 제시외수목(감나무외)은 개략적인 수량을 계수하여 별도 평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본건(기호4-1 건물)은 일부 타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제시외건물(기호ㄱ)은 (기호2,3)양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시외건물 기호ㄴ)은 일부 타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경계, 위치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본건 건물(기호4~6)은 귀 제시목록상 1145-2 및 1144번지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 합병으로 1144번지상에 소재하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1)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에는 대상물건을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 부동산의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원가법”

(2)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3)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

(4)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 이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의 적용

(1) 토지

본건 토지는 상기 평가방법중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방법(거래사례비교법)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2) 건물

본건 건물 및 제시외건물은 구조, 마감재, 현상 및 관리상태, 부대설비 등을 종합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3.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III. 토지평가

가.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평가

1. 비교표준지 선정

(1) 선정표준지

【공시기준일 : 2024. 01. 01】

기호	소재지 (함안군)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적용 필지
A	군북면 소포리 1334-4	대	324	단독 주택	계획 관리	소로 한면	사다리 평지	124,700	2
B	군북면 소포리 1135	전	707	전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34,300	1,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비교표준지 선정 및 그 사유

인근지역 내 공시지가표준지 중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14조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상기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함.

2. 시점수정(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당해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되, 2024년 07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로 인하여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 하였음.

(1) 함안군 계획관리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4.01.01.~2024.06.30	0.468%	2024년 06월까지 누계
2024.06.01.~2024.06.30	0.098%	2024년 06월 변동율
누 계 (2024.01.01.~2024.08.16.)	0.622% (1.00622)	$1.00468 \times (1 + 0.00098 \times 47/30)$

3.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상호대체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바,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

4. 개별요인 비교

후첨 “개별요인 비교표”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표준지A, 기호2】

조 건	항 목	세 항 목	표준지	대상	비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등의 상태	폭	1.00	0.95	가로의폭등 본건 열세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접근성	1.00	1.00	대등함.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고객의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1.00	대등함.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투형획지, 맹지	1.00	1.00	대등함.
	방위 고저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등	1.00	1.00	대등함.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0.95 x 1.00 x 1.00 x 1.00 x 1.00 x 1.00 ≒ 0.9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표준지B, 기호1,3】

조 건	항 목	세 항 목	표준지	대상	비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0	1.00	대등함.
		농로의 상대			
자연조건	일조	일조, 통풍등	1.00	1.00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등	면적	1.00	1.00	대등함.
		경사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등 조장의 정도	1.00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1.00	대등함.
		기 타			
격차율	1.00 × 1.00 × 1.00 × 1.00 × 1.00 ≒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2003다 38207(2004.05.14선고), 2002두 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1991.12.28)]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비교표준지와 시가와와의 괴리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이있음.

(2) 인근 평가선례(경상남도 함안군)

【자료출처:한국감정평가협회】

기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기준시점	평가단가 (원/㎡)	평가 목적	용도지역	비고
a	군북면 소포리 1335-0	대	423	2022.10.21	269,000	담보	계획관리	
b	군북면 소포리 0000	전	1,104	2022.10.21	132,000	담보	계획관리	

(3) 격차율 산정

1) 산식

$$\text{격차율} = \frac{\text{평가선례 기준 표준지가격} \times (\text{평가선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치} \times \text{개별요인비교치})}{\text{가격시점까지의 표준지가격} \times (\text{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비교 선례의 선정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선례 a,b”를 선정함.

3) 평가선례의 시점수정

a: 함안군 계획관리 지가변동율(2022.10.21. ~2024.08.16.): 1.444%(1.01444)

b: 함안군 계획관리 지가변동율(2022.10.21. ~2024.08.16.): 1.444%(1.01444)

4) 지역요인 비교

표준지와 평가선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

5) 개별요인 비교

① 표준지A, 선례a

비 교 항 목	격차율	비 교 요 인	비 고
가로조건	1.00	대등함.	
접근조건	1.00	대등함.	
환경조건	1.00	대등함.	
획지조건	1.10	형상등 표준지 우세함.	
행정적조건	1.00	대등함.	
기타조건	1.00	대등함.	
격차율계	1.100	$1.00 \times 1.00 \times 1.00 \times 1.10 \times 1.00 \times 1.00 \approx 1.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② 표준지B, 선례b

비 교 항 목	격차율	비 교 요 인	비 고
접근조건	1.00	대등함.	
자연조건	1.00	대등함.	
획지조건	1.00	대등함.	
행정적조건	1.00	대등함.	
기타조건	1.00	대등함.	
격차율계	1.000	$1.00 \times 1.00 \times 1.00 \times 1.00 \times 1.00 \approx 1.000$	

6) 격차율 산정

① 표준지A, 선례a

평가선례 기준 기준시점의 표준지 가액					
구분	선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선례a	269,000	1.01444	1.00	1.100	300,173

시점 수정후 기준시점의 표준지가액					
구분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표준지A	124,700	1.00622	—	—	125,47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평가선례 기준가액과 시점수정후 표준지 가액의 격차율		
선례기준 표준지 가액(A)	시점 수정 후 표준지 가액(B)	격차율(A/B)
300,173	125,476	2.39227

② 표준지B, 선례b

평가선례 기준 기준시점의 표준지 가액					
구분	선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선례b	132,000	1.01444	1.00	1.000	133,906

시점 수정후 기준시점의 표준지가액					
구분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표준지B	34,300	1.00622	—	—	34,513

평가선례 기준가액과 시점수정후 표준지 가액의 격차율		
선례기준 표준지 가액(A)	시점 수정 후 표준지 가액(B)	격차율(A/B)
133,906	34,513	3.87987

(4) 그밖의 요인

상기의 격차율, 평가선례 및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평가목적 등을 종합참작하여 그밖의요인 표준지A: 2.39, 표준지B: 3.87로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토지단가 결정

상기 제요인을 참작하여 하기 산식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음.

산식 = 공시지가(원/㎡)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밖의요인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 교 치	개별요인 비 교 치	그밖의요인 보 정 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34,300	1.00622	1.00	1.000	3.87	133,567	134,000	
2	124,700	1.00622	1.00	0.950	2.39	284,892	285,000	
3	34,300	1.00622	1.00	1.000	3.87	133,567	134,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1. 비교 거래사례 선정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2조 제12의 2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시점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c,d” 를 선정하였음.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실거래자료】

구분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	거래가격(원/㎡)	거래시점	적용필지
거래사례 c	장지리 822-0	대	계획관리	119	239,495	2021.07.28	2
거래사례 d	장지리 000	전	계획관리	1,281	136,125	2024.07.08	1,3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별도의 보정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됨.(1.00)

3. 시 점 수 정(지가변동율)

c: 함안군 계획관리 지가변동율(2021.07.28.~2024.08.16.): 4.487%(1.04487)

d: 함안군 계획관리 지가변동율(2024.07.08.~2024.08.16.): 0.131%(1.00131)

4.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와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구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 계	비 고
1	—	0.90	1.00	1.05	1.00	1.00	0.945	사례d
2	1.05	1.00	1.10	1.00	1.00	1.00	1.155	사례c
3	—	0.90	1.00	1.05	1.00	1.00	0.945	사례d

※기호1,3: 도로의상태등 접근조건 열세하고, 형상등 획지조건 우세함.

기호2: 가로의폭등 우세하고 인근환경 우세함.

6. 토지단가 결정

상기 제요인을 참작하여 하기 산식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음.

산식 = 사례단가(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기 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136,125	1.00	1.00131	1.00	0.945	128,807	129,000	
2	239,495	1.00	1.04487	1.00	1.155	289,029	289,000	
3	136,125	1.00	1.00131	1.00	0.945	128,807	129,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산가격의 검토 및 가격결정

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試算價額)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원/㎡)	거래사례비교법(원/㎡)	비 고
1	134,000	129,000	
2	285,000	289,000	
3	134,000	129,000	

2.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평가액은 위 같은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된다고 판단되므로 위관련 규정에 의거 규준성이 있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건물평가

1. 재조달원가 산정

재조달원가는 한국부동산연구원발행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을 참고하되, 건물의 구조 및 규모, 지역적 특성, 자재의 품질 및 시공방법, 재료비, 노무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본건과 유사한 구조 및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의 경매평가 및 담보평가지 적용하는 가격등을 종합 참작하여 간접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기호	용도	층수	기본단가 (원/㎡)	보정단가 (원/㎡)	재조달원가 (원/㎡)	내용년수
4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층	1,000,000	--	1,000,000	45
4-1	화장실	단층	500,000	--	500,000	45
5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층	1,400,000	--	1,400,000	45
6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층	950,000	--	950,000	45

※ 보정단가는 부대설비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등의 설치비용으로서 건물의 효용을 위한 것으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기 기본단가에 포함하였음.

2.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감가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감가수정은 내용년수 또는 관찰감가 등에 의하여 구할 수 있는 바, 본평가에서는 내용년수법(정액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건물평가

기호	층별	용도	재조달원가 (원/㎡)	감가수정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잔존	내용			
4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000	18	45	400,000	400,000	
4-1	단층	화장실	500,000	21	45	233,333	233,000	
5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00,000	21	45	653,333	653,000	
6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950,000	23	45	485,556	485,000	

※ 단가: 천원미만 절사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43	답	계획관리	128	128	134,000	17,152,000	
2	"	1144	대	계획관리	1,396	1,396	285,000	397,860,000	
3	"	1145-3	답	계획관리	280	280	134,000	37,520,000	
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27)	1145-2 1144 위 지상	에이, 비동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186.78	186.78	400,000	74,712,000	1,000,000 x18/45
4-1	"	"	부속건물 화장실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14.31	14.31	233,000	3,334,230	500,000 x21/45
5	"	"	시동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토담조 황토흙위 싱글지붕단층	99.11	99.11	653,000	64,718,830	1,400,000 x21/45
6	"	"	디동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154.76	154.76	485,000	75,058,600	950,000 x23/45
합 계								₩670,355,660.-	

제시외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ㄱ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44 1145-3	창고	조적조 및 철파이프조단층	(26.2)	(26.2)	50,000	1,310,000	150,000 x10/30
ㄴ	"	1143 및 타지상	창고	철파이프조 단층	(10.4)	(10.4)	5,000	52,000	20,000 x5/20
ㄷ	"	1144	보일러실	샤시조슬래브 지붕단층	(3.3)	(3.3)	50,000	165,000	150,000 x10/30
ㄹ	"	1144	가추	철파이프조 썬라이트지붕 단층	(9)	(9)	16,000	144,000	50,000 x10/30
합 계								₩1,671,000.-	
				이	하	여	백		

제시외수목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44 1145-3	수목	감나무외	(약6주)	(약6주)	일괄	420,000	
합 계								₩420,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소재 대배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중.소규모의공장, 임야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자체지반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3)토지는 '전' 및 (기호3)토지 일부는 건물이 점유중이며, (기호2)토지는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2) 토지 북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하며, (기호1,3)토지는 (기호2)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별첨 '사진 및 지적및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임.
- 2) 기 타: 없 음.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종물 |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건물의 구조

4.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 외벽: 적벽돌치장등 마감.
- 내벽: 벽지등 마감.
- 창호: 샷시창호임.

4-1. 조적조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 외벽: 적벽돌치장등 마감.
- 내벽: 타일등 마감.

5. 토담조 황토흙위싱글지붕 단층건으로서

- 외벽: 황토마감 마감.
- 내벽: 황토마감.
- 창호: 샷시창호임.

6.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 외벽: 적벽돌치장등 마감.
- 내벽: 타일등 마감.
- 창호: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4 : 근린생활시설(식당: 대부가든)

4-1: 화장실

5 : 근린생활시설(식당: 대부가든)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종물 |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 노래방으로 이용하였으나, 현황 작업장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임.
- 2) 기 타: 없 음.

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43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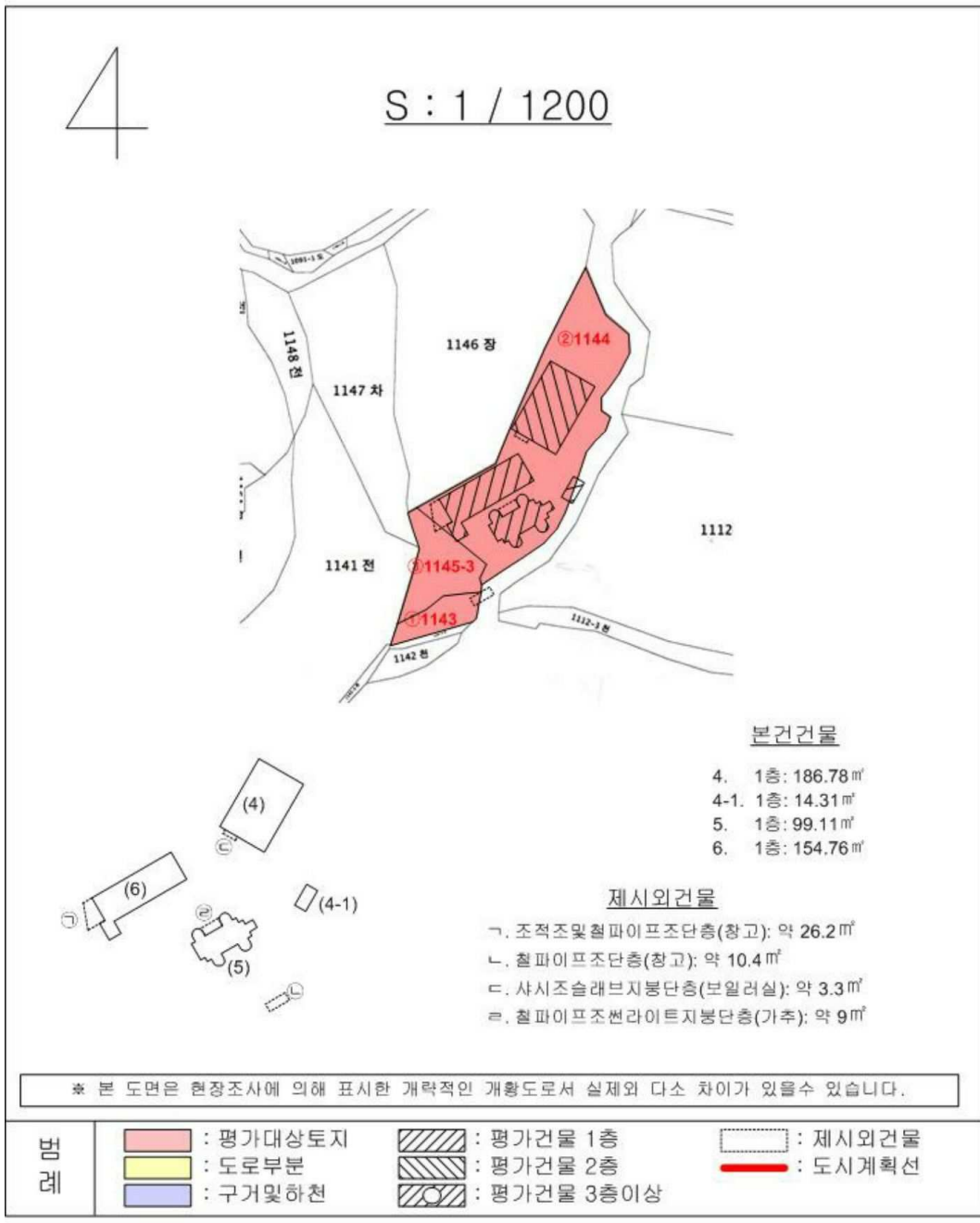


지 적 도

지 적 및 건물 개 황 도

4

S : 1 / 1200





(2)



(1, 3)



4



4-1



5



6





